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94
----------	-----

2024. 1. 30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월 25일

－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－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승환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에 따라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‘시·도응급의료지원단’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

- 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지역중심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4년 위탁개시일 ~ 2027년(3년)
- 수탁기관 :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
- 선정방법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에 따름
- 위탁금액 : 年306백만원(기금^{40%}125, 도비^{60%}181) * '24년 예산기준
- 위탁내용
 -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,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 -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 - 응급의료 서비스 질 및 통계 관리, 응급의료 교육·훈련 홍보 지원
 - 「응급의료 시행계획」 및 「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」 수립 지원
 -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,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
 - 그 밖에 충청북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제3항²⁾ 및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 제11조³⁾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임.
- 응급의료지원단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거나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.
 - 충청북도는 지난 해 8월(제411회 임시회) 의원발의로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면서 집행부 및 응급의료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 응급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 운영이 아닌 별도 설치·운영토록 규정하였음.
- 이에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제1항⁴⁾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2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시·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3) 제11조(응급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)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4)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, 먼저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⁵⁾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하고, 같은 조례 제4조의²⁶⁾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- 응급의료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아래 <표1>에서와 같이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, 현황 조사 및 분석,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, 응급의료 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등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들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호에 규정된 ‘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**’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.

<표1>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주요 업무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| 2.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|
| 3.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| 4.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|
| 5.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| 6.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|
| 7.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 | |
| 8. 응급의료 서비스 질(質) 및 통계 관리 | 9. 응급의료 교육·훈련 및 홍보 지원 |
| 10.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| |
| 11.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| |

- 5)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**
 - 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- 6) 제4조의²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3. 경제적 효율성
 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-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- 또한 민간위탁 적정성 측면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항목별 의견 <표2>을 확인한 결과, 관 직영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 제5항7)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 제16조8)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위탁 대상기관은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제한됨.

<표2>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건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•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• 정책기반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성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③ 경제적 효율성	• 응급의료 관련 전문인력, 정보, 협업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•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가능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•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용이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•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	• 응급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한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7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⑤ 시·도위원회 및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8) 제16조(위탁운영)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
 -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응급의료지원단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도 위탁 운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,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절차상 만전을 기하고,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에 따라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‘시·도응급의료지원단’을 설치·운영 하여야 함
- 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지역중심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4년 위탁개시일 ~ 2027년(3년)
- 수탁기관 :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
- 선정방법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에 따름
- 위탁금액 : 年306백만원(기금^{40%}125, 도비^{60%}181) * '24년 예산기준
- 위탁내용
 -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,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 -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 - 응급의료 서비스 질 및 통계 관리, 응급의료 교육·훈련 홍보 지원
 - 「응급의료 시행계획」 및 「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」 수립 지원
 -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,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
 - 그 밖에 충청북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수탁기관 모집공고 : '24. 2.
- 수탁기관 심의·평가 및 선정 : '24. 2.
- 협약체결 및 업무개시 : '24. 3.

3. 참고사항

-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위탁 추진계획(붙임1)

4. 관계법령 발취(붙임2)
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(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운영)
-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(응급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), 제12조(업무), 제13조(구성 등), 제16조(위탁운영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5. 기타
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(붙임3)

I 추진근거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(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), 제16조(위탁운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II 위탁개요

- 사 무 명 :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4년 위탁개시일 ~ 2027년(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공기관 또는 민간 위탁
- 자격요건 :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
- 사업예산 : 306,400천원(기금 125,000, 도비 181,400) ※ '24년 기준
 - (국비보조) 250,000천원(기금 50%, 도비 50%)
 - ※ 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비에 의함
 - 인건비 217,340천원, 사업비 22,660천원, 운영비 10,000천원
 - (자체사업) 56,400천원(도비 100%)
 - 사무실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 28,400천원, 사무실 조성 28,000천원
- 주요사무
 -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,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 -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 - 응급의료 서비스 질 및 통계 관리, 응급의료 교육·훈련 홍보 지원
 - 「응급의료 시행계획」 및 「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」 수립 지원
 -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,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
 - 그 밖에 충청북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

< 응급의료지원단 개요 >

- ❖ 명 칭 :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
- ❖ 설치근거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(사·도응급의료위원회) 등
- ❖ 설치시기 : '24년 3월중
- ❖ 조 직 : 1단 2팀 5명(단장* 1, 전담인력 4) * 단장은 비상임



*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가능

III 추진절차

① 기본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계획 수립 	'24. 1.
② 수탁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탁기관 모집공고 - 방법 : 공개모집(14일 공고) 	'24. 2.
③ 수탁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탁심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- 구성 : 5 ~ 9명(위원장1, 부위원장1 포함) - 심사 : 전문성, 사업계획 등 - 결정 : 최고 득점자 선정 	'24. 2.
④ 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약체결 및 공증 	'24. 3.
⑤ 사무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·수탁 사무개시 	'24. 3.

※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 **도의회** 민간위탁 **동의** : '24. 1월

IV 세부 추진계획

1 수탁기관 모집공고

- 공고기간 : '24. 2월중(14일간)
-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- 신청자격
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
 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- 조직 및 인력구성 조건 : 1단 5명(단장 1, 부단장 1, 단원 3)

1. 단장^{비상임} : 수탁기관 내 기존인력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
 - ▶ 응급의학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
 - ▶ 또는 응급의료기관(센터급 이상)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2. 부단장 :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
 - ▶ 응급의료 관련 전문기관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 - ▶ 또는 충청북도의 승인을 거쳐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를 임명
3. 단원 : 전담 실무인력 3명을 신규채용 배치,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한
 - ▶ 자격요건 : 간호사, 1급 응급구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, 보건행정 경력자

※ 응급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타 응급의료 직무종사 경험자 우대
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
- 위탁조건
 - 관련법령, 운영규정, 예산집행지침, 협약서,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
 - 매년 정액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추가 지원 없이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원활히 운영
 - 응급의료지원단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과 독립된 형태로 운영

②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- 개최시기 : '24. 2월중
- 구성인원 : 5~9명 정도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*
 -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(위원회 구성·운영)
 -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
 -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, 업무주관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 위촉
 - 간사는 위탁사무의 주관 과장
- 심사항목 : 신청기관의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충실도 등
- 심사방법 : 공모기관별 20분 이내 발표(ppt) 및 위원별 심사
- 수탁자 선정
 -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 합산의 평균값으로 최종 점수 산정 ⇨ **최고 득점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**
 - 공모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,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점수를 득하였을 시 해당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- 결과발표 : 도 홈페이지 공개 및 수탁기관 개별 통지

③ 협약체결 및 위·수탁 사무개시

- 체결시기 : '24. 2월중
- 협약서 ⇨ 공증실시
 - 위탁사무 범위 및 위탁기간, 수탁자 의무,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
 - 운영인력(고용승계 등), 사업실적보고, 지도감독, 협약의 해지
- 위·수탁 사무개시 : '24. 3월중

V 향후계획

- 도의회 동의 : '24. 1월
- 수탁기관 모집공고 : '24. 2월
- 수탁기관 심의·평가 및 선정 : '24. 2월
- 협약체결 및 업무개시 : '24. 3월

□ **응급의료에 관한 법률**

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
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
4.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
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
6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
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
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③ **시·도지사는** 제2항의 시·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**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**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1.>

④ 시·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

⑤ 시·도위원회 및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제7조의2(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운영)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(이하 이 조에서 "지원단"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
2. 지원단의 단장은 시·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말도록 할 것.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

제11조(응급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)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**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** 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12조(업무)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
2.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3.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
4.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
5.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6.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
7.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
8. 응급의료 서비스 질(質) 및 통계 관리
9. 응급의료 교육·훈련 및 홍보 지원
10.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
11.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

제13조(구성 등) ①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지원단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단을 대표하며,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도 보건정책과장과 외부 전문가 1명을 공동 지원단장으로 할 수 있다.

제16조(위탁운영)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**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**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**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

1 추진근거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

2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정책기반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성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응급의료 관련 전문인력, 정보, 협업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가능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용이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	○ 응급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한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	